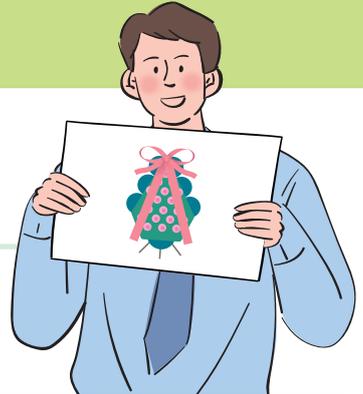


재사용 화환 표시 이렇게 합니다

- ✓ '생화'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'재사용 화환'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
- ✓ 소비자나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


표시사항

1.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

- 위치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본 **앞면의 왼쪽 상단**에 표시
- 글자 크기

리본 크기	리본의 폭이 12cm 이상인 경우	리본의 폭이 7cm 이상 12cm 미만인 경우	리본의 폭이 7cm 미만인 경우
(1) "재사용 화환" 표시	50포인트 이상	40포인트 이상	20포인트 이상
(2) 그 외 내용 표시	25포인트 이상	20포인트 이상	10포인트 이상

- 글자색: 리본의 **바탕색과 다른 색깔**로 선명하게 표시
- 리본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되, 직접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각인·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

2.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

-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**화환 앞면의 상단이나 하단**에 풋말을 고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여 표시
- 풋말, 스티커 크기: 가로 20cm 이상 × 세로 15cm 이상
- 글자색: 풋말 또는 스티커의 **바탕색과 다른 색깔**로 선명하게 표시
- 글자 크기: "재사용 화환" 표시는 **70포인트** 이상, 그 밖의 내용은 **40포인트** 이상

3. 통신판매 하는 경우

- 화환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, **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**에 '재사용 화환'이라고 표시
- 화환의 **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크기의 글자**로 표시하되,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**다른 색깔**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**선명한 색**으로 표시

위반시 과태료(표시의무자)

위반 행위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미표시 / 표시방법 위반 /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/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·변경	300만원	600만원	1,000만원

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.mafra.go.kr (국민소통 > 법령정보)

*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

화훼류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

표시 대상 및 기준

구분	국내산	외국산
대상	• 국화, 카네이션, 장미, 백합, 튜립, 글라디올러스, 거베라, 아이리스, 프리지어, 칼라, 안개꽃(11품목, 절화에 한함)	• 수입·판매되는 모든 화훼류(분화 포함)
기준	• 국산(국내산) 또는 '시·도명', '시·군·구명'	•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

* 표시대상자: 화훼류를 수입하는 자, 생산·출하하거나 판매(통신판매 포함)하는 자,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·진열하는 자

원산지 표시 방법

- **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:**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·각인·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
- **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:** 풋말, 안내표시판, 스티커, 일괄 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표시
- **통신판매 하는 경우**



규정	전자매체 이용(인터넷, PC통신, 케이블TV, IPTV, TV 등)	인쇄매체 이용(신문, 잡지 등)
표시 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표시 • 허용: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표시 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• 허용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
글자 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(최초 등록된 가격표시 기준)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/2 이상 • 허용: 광고 면적 기준 8~20 포인트 이상

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사항

거짓표시 처분 기준	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기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형사처분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• 과징금: 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 • 위반업체 공표: 농림축산식품부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 • 위반자 의무교육: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표시: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• 표시방법 위반: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/2 • 조사 거부·방해: 100~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.naqs.go.kr (업무소개 > 원산지관리 > 원산지표시관리 > 관련법령 및 고시)

*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

